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265)

2024. 11. 25.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265

I. 조례안 개요

1. 제출경위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24년 10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2. 제안이유

- 어울림플라자(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하는 복지 문화시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2조)
나. 어울림플라자의 주요 기능(안 제3조)
- 장애·비장애 지역주민 등 시민에게 문화·체육 교육 및 여가 활동 공간 지원
- 장애인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다. 어울림플라자의 이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4~6조)
- 이용료 부과·징수, 납부·반환, 이용 제한 등
라. 어울림플라자의 대관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7~12조)
- 대관 허가·취소, 대관료 부과·감면, 대관 제한 및 대관자의 의무 등

마.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안 제13~16조)

- 투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 위탁 및 비용 지원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2)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있음(원안가결)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있음(반영)
 - 개선의견: 어울림플라자 이용대상 표현 수정, 이용료 감경대상에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 추가
 - 반영사항: 반영완료(제3조제1호, 제4조제2항제7~제8호)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7.18. ~ 2024.8.7.)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제정안의 제안 개요

- 서울시는 (舊)한국정보화진흥원이 대구로 이전하게 되면서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강서구의 부지를 활용해 장애인의 교육·문화시설과 지역주민 등이 함께 어울려 사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및 지역활성화 시설의 건립을 추진함.

어울림플라자 개요

- 위 치 : 강서구 공항대로 489(등촌동)
- 규 모 : 지상5층, 지하4층(대지면적 6,683㎡, 연면적 23,915㎡)
- 주요시설 : 장애인 연수·교육 시설, 일반 임대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 사업방식 : SH공사 위탁개발
- 총사업비 : 85,998백만원(시비 64,548 / SH공사 21,450) ※ 토지비 41,839백만원 별도



어울림플라자 조감도

- 어울림플라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의3¹⁾에 따라 위탁개발로 조성한 사업임. 이에 따라 SH공사에서는 어울림플라자 건립비용을 일부 투입하여, 어울림플라자 임대료 수익으로 상환받게 되며, 개발사업의 수입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게 됨.
- SH공사는 개발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서울시에 귀속시키고, 서울시는 일정 기간 SH공사에 관리운영을 위탁함으로써 SH공사는 이 기간동안 임대·분양 사업을 수행하게 됨.
- 임대·분양수입 등 위탁개발에 따른 모든 수입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SH공사는 개발·분양, 관리업무에 따른 수수료와 개발비용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됨.²⁾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43조의3(위탁개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해당 일반재산의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9.>

1. 분양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2.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3. 혼합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④ 제3항의 개발의 종류에 따른 위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9.>

1. 분양형 개발: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2. 임대형 개발 : 30년 이내
3. 혼합형 개발 :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⑤ 제4항의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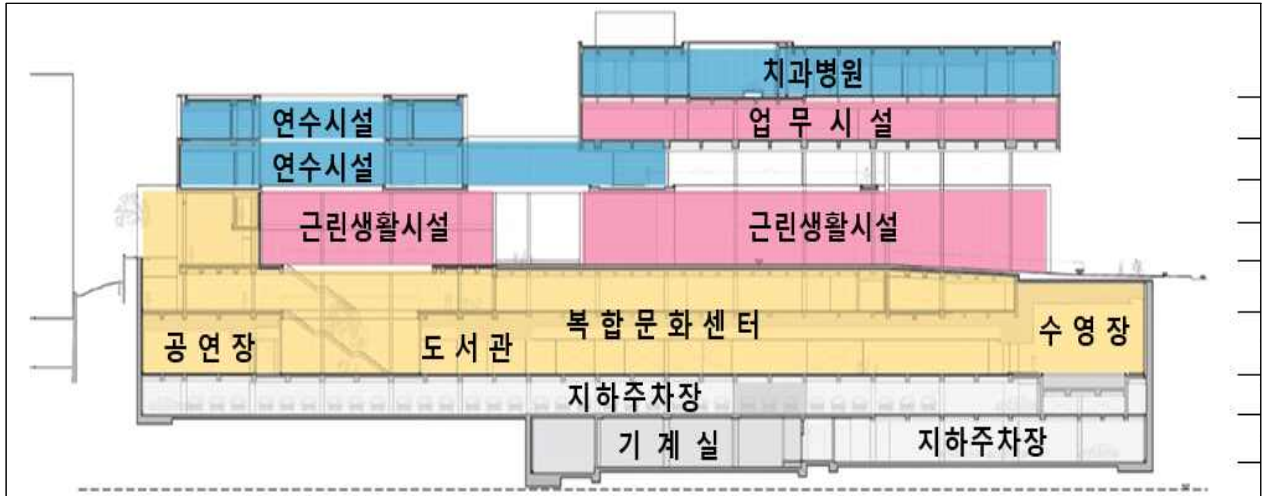
⑦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의성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개발에 따른 사업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⑨ 위탁개발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의안번호 -2346,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건립 위탁개발 관련 신규투자사업 참여 동의안”. (2018.2.), 서울



구분	시설운영	시설관리	비고
복지지원시설(연수시설, 치과병원)	서울시 운영 (민간위탁)	SH공사	서울시 운영 (민간위탁)
주민편의 시설(복합문화센터)			
임대시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SH공사		SH공사
지하주차장, 기계실			

- 서울시 복지시설에서는 SH공사에서 운영하게 될 임대시설을 제외한 복지지원시설, 주민편의시설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할 계획에 있음.
- 본 제정안은 2025년 7월 준공을 앞둔 어울림플라자(복지지원시설, 주민편의시설)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어울림플라자 건립 추진경과

- 「어울림플라자」 기본구상(시장방침) 수립 : '15.6월
- 어울림플라자 사업 추진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 '16.4월
- 투자심사 완료 : '17.6월
- 지역주민(학부모 등) 공청회 : '17.8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 '17.9월
- 공유재산 개발 및 관리 위수탁 계약 체결(SH공사) : '17.12월
- 국제현상설계 공모(지명공모) 추진 : '18.9~12월
- 설계용역 착수, 사업부지 지반조사 완료 : '19.1월/9월
- 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온라인 생중계) 개최 : '20.7.30.
- 舊 정보화진흥원 철거 : '20.12월~'21.2월
- 어울림플라자 건축협약 완료 : '21.4.21
-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건설공사 계약심사 완료 : '21.6~7월
- 건설공사 입찰공고 및 건설공사업체 선정 계약(SH공사) : '21.8~11월
- 어울림플라자 착공필증 교부 : '22.2.10.
- 어울림플라자 공사개시 : '22.8.3.

- 동 조례제정안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7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례안의 조문 배열>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p> <p>제2조(정의)</p> <p>제3조(어울림플라자의 기능)</p> <p>제2장 시설의 이용</p> <p>제4조(이용료)</p> <p>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p>	<p>제10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p> <p>제11조(대관 제한)</p> <p>제12조(대관자의 의무)</p> <p>제4장 운영의 위탁</p> <p>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p> <p>제14조(관리·운영규정의 작성 등)</p> <p>제15조(운영비 등의 지원)</p>
---	---

제6조(이용 제한)	제16조(지도·감독)
제3장 시설의 대관 등	제17조(시행규칙)
제7조(대관 허가)	부 칙
제8조(대관 허가 취소)	
제9조(대관료 부과 및 감면)	

2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총칙 (안 제1조~제3조)

- 제정안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제1조) 및 정의(제2조), 어울림플라자의 기능(제3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이하 “어울림플라자”라 한다)”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89(등촌1동)에 설치한 복지문화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어울림플라자 내의 공연장, 다목적강당, 문화교실, 대회의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수영장, 주차장 등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어울림플라자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대관료”란 전시, 공연, 행사, 교육 등을 위하여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p>제3조(어울림플라자의 기능) 어울림플라자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 및 비장애 지역주민 등 시민에게 문화·체육 교육 및 여가 활동 공간 지원

- 2. 장애인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향후 시장이 어울림플라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과 기능을 명시하고 있는 본 조항들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³⁾에 따르면 장애인이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44.3%), 장애인 재활병의원(25.9%), 장애인 복지관(21.8%), 장애인체육시설(14.7%) 순으로 나타남.
- 또한,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3.3점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3.1점으로 건강상태(2.9), 한달수입(3.0)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⁴⁾
-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이하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불편없이 일상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공간, 도서관, 문화·체육공간 등을 운영할 예정에 있어 장애인들의 여가생활 등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4.30.)

4)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 5점 기준 : 5점 매우 만족 ~ 1점 매우 불만족

	가족관계	친구들수	살고 있는 곳	건강상태	한달수입	여가활동	하고 있는 일	결혼생활	전반적 생활만족도
2023년	3.9	3.4	3.8	2.9	3.0	3.1	3.7	3.9	3.3
2020년	3.8	3.3	3.6	2.8	2.8	2.9	3.4	3.7	3.2

나. 시설의 이용(안 제4조~제6조)

제2장 시설의 이용

제4조(이용료) ① 시장은 시설의 이용자에게 원가·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9.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10. 65세 이상 어르신
11. 어울림플라자 운영으로 인해 소음과 빛 등 생활공해, 사생활 제한 등의 불편이 발생하는 곳으로 시장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료는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하기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규칙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용료를 체납하거나 이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3. 다른 이용자 또는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안 제4조~제6조에서는 어울림플라자의 이용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53조⁵⁾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156조제1항⁶⁾에서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법상 사용의 종류와 “사용료”, “이용료” 등의 개념이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수익자의 허가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한 자가 일반 시민의 자유사용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⁷⁾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이용료의 상한선과 하한선만을 정하고 별표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5)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7) 안민주(2022).“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관련 쟁점 연구”.법제처.

[별표1] 어울림플라자 이용료 부과기준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부 과 기 준
연수교육		당일 반일 이내	15,000원 ~ 50,000원	○ 토요일, 공휴일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당일 전일(8시간)	30,000원 ~ 100,000원	
		1박2일 (12시간)	45,000원 ~ 150,000원	
		2박3일 (18시간)	67,000원 ~ 225,000원	
생활문화 생활체육		당일	5,000원 ~ 50,000원	
		1개월	40,000원 ~ 100,000원	
수영장	수강료	1개월 (주3회)	60,000원 ~ 100,000원	
	자유수영	1회	5,000원 ~ 10,000원	
연수객실(숙박)		1박	100,000원 ~ 140,000원	

- 또한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어르신 등 사회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예우 차원에서 감면 조항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 장애인 시설은 지역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어울림플라자 역시 건립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왔음.
- 따라서, 같은항 제11호에서 어울림플라자 운영으로 인해 소음과 빛 등 생활공해, 사생활 제한 등의 불편이 발생하는 곳으로 시장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것

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5조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서는 이용자의 이용료 납부 및 이용전 이용을 취소한 경우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취소된 건에 대해서 이용료를 반환하되 그 상세한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이용자의 이용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시설이라는 점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시설의 대관 등 (안 제7조 ~ 제12조)

-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서는 시설의 대관에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제3장 시설의 대관 등

제7조(대관 허가) ①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표 2의 시설에 대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대관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대관 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대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대관자가 대관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대관자가 사용목적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대관자가 이 조례·규칙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9조(대관료 부과 및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제1항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주최·주관하는 행사: 면제
2. 시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액
3. 대관자가 장애인 단체인 행사: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액. 다만, 구체적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대관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대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정치·종교 단체가 개최하거나 정치·종교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대관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임의로 대관신청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대관신청인이 제8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대관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7. 대관신청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상 대관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대관자의 의무) ① 대관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대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를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정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별표 2의 시설에 대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별표 2] 어울림플라자 시설 대관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공연장	350,000원 ~ 550,000원	1. 1회(4시간) 단가로서, 1회는 오전(10:00~14:00), 오후(14:00~18:00), 야간(18:00~22:00)으로 함 2.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다목적강당	250,000원 ~ 450,000원	
문화교실	10,000원 ~ 60,000원	1. 시간당 단가이며,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이용료까지 가산함 2.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대회의실(식당)	60,000원 ~ 120,000원	
세미나실	40,000원 ~ 80,000원	
분임토의실	20,000원 ~ 40,000원	

※ 시설별 부속시설 이용료는 원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관료와 별도로 청구 가능

- 이에 따라 어울림플라자 내 공연장, 다목적강당, 문화교실, 대회의실(식당),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등에 대해 대관을 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유사 시설인 여성프라자, 여성가족프라자, 여성발전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선의 대관료를 책정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의 상세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근거하여 대관료의 부과 및 감면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후원하는 행사는 대관료의 전액 또는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관자가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감액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어울림플라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시설의 본래 목적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대관이 제한되는 경우와, 대관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라. 운영의 위탁 (안 제13조~제16조)

- 안 제13조부터 제16조에서는 어울림플라자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4장 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 투자·출연기관,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관리·운영규정의 작성 등) ① 수탁기관은 어울림플라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어울림플라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안 제13조에서는 어울림플라자의 관리·운영을 시 투자·출연기관,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음.
- 안 제14조부터 제16조는 어울림플라자의 관리·운영규정의 작성, 운영비 등의 지원,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바. 기타 사항 : 시행규칙 (안 제17조)

- 안 제17조에서는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울림플라자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종합의견

- 2023년 기준 서울시의 장애인 인구는 389,795명으로 전체 서울시 인구의 약 4%에 달함. 그러나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 등을 위한 시설은 부족하다 할 수 있음.

<표> 서울시 등록장애인 현황 ('23.12월 기준)

(단위: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장애인등록	394,843	394,190	392,123	391,859	389,795
서울시인구	9,729,107	9,668,465	9,509,458	9,428,372	9,386,034
장애인비율	4.06%	4.08%	4.12%	4.16%	4.15%

- 본 조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문화 시설인 어울림플라자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 어울림플라자는 수영장, 도서관, 강당, 공연장, 체육센터, 장애인 교육·연수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며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집행기관에서는 어울림플라자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절한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선정해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민간 위탁 절차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임.